

		보도설명자료	
		배포일시	2020. 9.29 (화) / 총6매(본문 1매)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정희, 사무관 추성훈, 정재웅 • ☎ (044) 201-4204, 4186, 4189
	감사담당관실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안정훈, 사무관 정병수, 주무관 장경찬 • ☎ (044) 201-3110, 3085, 3114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감사와 해임 관련 국토교통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.

-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'20.6.10일 부터 감사를 실시하였으며, 감사결과 「공공기관운영법」, 「부패방지법」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.
 - 이에, 「공공기관운영법」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건의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으며,
 - 지난 9.24일 동 운영위원회의 의결 및 이에 따른 후속절차를 거쳐 해임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,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(9.28)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- 한편, 구본환 사장 측이 제기하는 감사절차상 문제, 불법 가택침입 등은 사실이 아니며, 세부 감사결과는 '20.9.29(화)부터 공개*되는 전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* 경로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→ 정책자료 → 감사결과공개

첨부 : 감사결과 관련 주요 Q&A. 끝.

		이 보도참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과 추성훈 사무관(☎ 044-201-4186), 정재웅 사무관(☎ 044-201-4189), 감사담당관 정병수 사무관(☎ 044-201-3085), 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-	--

1. 감사 배경 및 경과는?

- 이 사건 관련 제보*가 관계기관에 접수(‘20.4)되어, 관계기관에서 사장(‘20.5.13) 및 관계자 문답 등 기초 조사를 한 후 국토부에 이첩(6.4)

* 국감 당일(‘19.10.2) 행적 국회 허위보고 및 인사감질

- 국토부에서는 인천공항공사에 조사개시 통보(‘20.6.9)하고 현장 조사(‘20.6.10~) 등 감사를 실시한 후 ‘20. 9. 8. 감사결과 확정

2. 감사 결과는?

- ‘19년 국감 당일(10.2) 국감장 이석 후 비상 대비태세 소홀, 당일 일정에 관한 사유서 국토부 및 국회 허위보고, 공사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직위해제 지시 등 공공기관장으로서의 ‘충실의 의무’ 위반 확인

[국정감사 회의록]

▶ (○○○)위원장과 3당 간사 간 협의 결과 태풍 대비 관련기관인 SOC 관련 업무 기관장이 태풍 현장으로 가서 대응을 하기 위해 자리를 이석하는 것에 간사님들과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면서, 태풍에 대비하여 이석해야 될 태풍 관련 기관장들 한국도로공사 ○○○ 사장, 한국철도공사 ○○○ 사장, 한국철도시설공단 ○○○ 이사장, 인천국제공항 ○○○ 사장, 한국공항공사 ○○○ 사장,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○○○ 이상 6명은 바로 국감장을 이석하셔도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

- 직무수행을 게을리하고 인사운영의 공정성을 훼손한 책임을 물어 사장을 해임건의* 하도록 처분요구 (→ 항공정책실장)

* 공기업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공운위 심의의결 사항임(공운법 제35조)

☞ 세부 감사결과는 ‘20.9.29(화)부터 공개*되는 전문 참조

* 경로 :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→ 정책자료 → 감사결과공개

3. 세부 감사결과 공개가 늦은 이유는?

- 금번 감사결과는 공기업 사장 '해임건의'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한 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안이며, 그간 공운위 심의 등 후속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공개할 수 없었음
- 해당 사안에 대한 조치(해임통보 9.28일., 해임일 9.29일.)가 마무리 되어 전문을 공개하게 되었음

4. 사장의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생략한 채 해임 절차를 진행한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닌지?

- 감사 재심의와 공공기관장 해임은 근거 법령이 다른* 별개의 절차이므로, 감사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완료한 이후 해임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, 현재까지 재심의 요청도 없었음
- * 재심의 : 「공공감사법」 제25조, 해임 : 「공공기관운영법」 제35조
- 참고로, 감사 및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장은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가졌음

5. 사장의 동의 없이 관사를 조사한 것은 불법 강제 수색이 아닌지?

- 불법 강제수색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
- 인천공항공사 관사는 공사가 위탁·관리하는 시설로서, 감사 당시, 관사를 관리하는 직원의 동의를 받고 관리자의 안내를 받아 관사를 출입(6.11)한 것임(출입문 개방도 관리자가 해 주었음)
- 관사 방문 이유는, 국감 당일('19.10.2) '관사에 대기하였다'는 사장 주장과, '방문하지 않았다'는 제보 내용을 규명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사항목이었음
- 참고로, 구본환 사장은 부임('19.4.16) 이후 방문조사 당일(6.11)까지 약 1년 2개월의 기간 동안, 관사를 2회 정도 사용한 것으로 다수의 관계자가 진술함

6. 사장은 관사 방문조사가 정규직 전환 발표(6월 22일) 이후인 6월 25일에 실시되었다고 주장 하는데?

-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
- 관사 방문조사는 관리직원의 동의와 안내를 받아 6월 11일에 한번만 실시하였음

7. 사장은 신도시쪽(인천에너지부근) 배수지를 점검했는데, 감사실에서는 을왕리쪽 배수지를 보고 사장이 들리지 않았다고 기재해 놓았다고 주장 하는데?

-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
- 신도시 쪽 배수지(인천에너지부근) 갑문 점검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음

8. 사장은 '풍수해 위기대응 매뉴얼' 등 관련 규정을 준수했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데?

- 감사결과 문책 사유는 매뉴얼 준수 여부가 아니라, 태풍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국감장 이석(15:30)까지 허용해 준 국회의 요청과 다르게 곧바로 자택으로 퇴근(18:00)하고 지인과 식사(18:40~)를 하는 등 기관장으로서 태풍 대비를 소홀히 한 부분을 증점으로 보았음
- 또한, 이러한 행적을 숨긴 채 철저히 대비한 것처럼 국회 등에 허위 보고한 부분도 엄중하게 판단하였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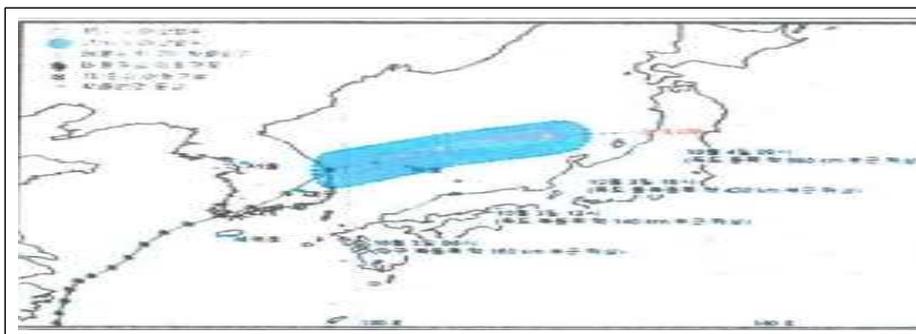
< 사장이 국회에 제출(10.4) 한 행적 사유서 >

▶ (동선) 국감장 이석(15:30) → (비상대책본부 설치 등 검토(16:30~17:00) → 태풍상황 파악·분석(18:00)) → 인천공항 도착(19:00) → 공항 배수지 갑문 등 외곽점검(19:00~20:00) → 영종도 관사(20:00~21:10) → 국토부 관계자 통화(21:10~22:30)

9. 국감 당일 18시에는 기상특보가 이미 해제되어 대응조치가 필요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?

- 국감 당일(10.2) 18:00 기준 태풍이 여전히 목포 남서쪽 해상에 있었고, 국감이 종료된 22:30 기준으로도 목포 인근에 상륙한 상황이었음
- 유동적인 태풍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라고 기관장들에게 국회에서 이석을 허용한 만큼 현장인 인천공항으로 가서 태풍 대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
- 한편, 사장이 기자회견(9.16, 인천공항)에서 제시한 태풍상황(태풍 경로) 자료는 국감 당일('19.10.2)과 무관한 '19. 10. 3. 06시경 기상도임

< 사장이 기자회견(9.16)시 제시한 기상도 >



10. 사장은 팀장 보직 탈락자가 항의 메일을 보낸 것이 인사권에 불복종 한 것이므로 직위해제 사유라고 주장하는데?

-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님
- 해당 직원이 인사명령에 대한 진술권 또는 인사고충을 표명한 것으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
 - 공사 내부 규정에 따르면 직원은 소속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, 공사 법무팀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검토의견 제시
 - 사장은 이 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채 직위해제를 강행하라고 지시하고, 인사위원들에게도 직위해제를 결정하라는 취지의 강한 의견 표명
 - 인천지방노동위원회(‘20.6.2) 및 중앙노동위원회(‘20.9.10)에서도 이 사안을 부당 직위해제로 인정한 바 있음